

긴 급 발 주 사 유 서

1. 발주건명 : 영화분야 블랙리스트 사건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구술채록 시
범사업 연구 용역

2. 근거법령

-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
경우 긴급입찰 가능
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
3. 긴급발주사유

- 동 건은 2022.4.27. 제4차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
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검토 및 추진 중인 사업으
로 2022.7.22. 사업추진이 계획이 확정됨
- 당초 용역예정 사업기간은 5개월 이었으나 직제개편으로 인한 담당자의
변경과 사업내용의 적절성 검토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
- 또한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
원회의 존속기간이 연내까지 활동하기로 한정되어 있어 조속한 사업추
진이 필요한 상황임
- 위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당초계획 대비 2개월을 단축하여 연구
기간을 3.5개월로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한 바
- 상기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
원회의 활동기한을 감안하고 활동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려는 목적을 달
성하고자 긴급입찰을 의뢰하고자 함

2022. 7. 22.

영화진흥위원회

